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46
----------	-------

발의연월일 : 2025. 12. 9.

발 의 자 : 김남근 · 강준현 · 김남희
김 윤 · 김준혁 · 남인순
박용갑 · 박 정 · 박정현
박지원 · 박해철 · 손명수
신정훈 · 오세희 · 이광희
이용우 · 이재관 · 이훈기
임미애 · 정진욱 · 최민희
최혁진 · 허 영 · 황정아
의원(24인)

제안이유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 공정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음.

과거 이용사업자 단체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음식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합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이용사업자들의 부담 완화 효과는 없었으며, 그 사이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반 도·소매 업종까지 배달사업을 확장하고 광고비를 인상하는 등 독과점 남용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왔음.

이러한 입법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시장확대를 위해 무료배달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여 수수료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이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시장구조, 독과점 정도, 이용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비용 전가에 대한 규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특히 시장지배력이 큰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실제로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폭리 문제에 대응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카드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성공적인 입법 경험 있음.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관련 법령만으로는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무료배달비용 전가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대수수료제도를 도입하고, 배달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에 대한 이용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음식배달플랫폼 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 음식배달플랫폼 소비자, 음식배달종사자 등을 정의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 등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우대 서비스 이용료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배달종사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금지함(안 제5조).
- 다.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사업자가 배달 방식, 배달비 분담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사업자 대상 배달비 분담 강제, 배달비 분담 수준에 따른 차별 및 불이익제공을 금지함(안 제6조).
- 라.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음식배달플랫폼을 통하여 사업자 현황, 우대 수수료율 및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조).
- 마.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입점업체 현황, 소비자의 배달비 분담 내역 등 최종 결제금액의 구성 내역, 예상 배달 소요시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2조).
- 바.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의 신고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이나 해

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배달플랫폼”이란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외식상품(이하 “외식상품”이라 한다)을 둘 이상 이용자 간에 근거리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2.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음식배달플랫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가. 외식상품의 주문·결제·배달 중개
 - 나. 외식상품의 주문·결제 중개 및 배달의 직접 수행
 - 다. 외식상품의 주문·결제 중개(이 경우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가목 또는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란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거래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라 한다)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와의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음식배달플랫폼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란 음식배달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사업자로부터 외식상품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6. “음식배달종사자”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외식상품을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7. “음식배달비”(이하 “배달비”라 한다)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음식배달종사자에게 배달 업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이하 “서비스 이용료”라 한다)란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이용사업자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로 부터 제공받는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고객관리 등 각종 서비스의 대가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음식배달플랫폼 거래에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배달플랫폼 사

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각종 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외식상품의 총 판매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총 판매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월평균 국내 활성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사업자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음식배달플랫폼 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서비스 이용료 차별금지 등) 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서비스 이용료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이하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등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료(이하 “우대 서비스 이용료”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④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새로운 명목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당하게 증액하는 등으로 제3항의 우대 서비스 이용료 적용 의무를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배달비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으로 제3항의 우대 서비스 이용료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배달종사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지하는 우대 서비스 이용료 적용 의무 회피행위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부담 전가 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 산정 및 제4항·제5항에 따른 금지의무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배달비의 산정 기준 및 부과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 산정 및 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매출액 정보 등 필요한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배달비 분담 수준 등) 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용사업자가 배달 방식, 배달비 분담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특정 배달 방식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배달비 분담을 강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배달비 분담 수준에 따라 부당하게 해당 사업자를 차별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달 방식 강요 및 이용사업자 차별·불이익 제공 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 공개 의무) 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음식배달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제5조에 따른 우대 수수료를 및 모든 이용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직전 연도 평균 수수료를
3. 이용사업자,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소비자 정보제공) 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입점업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할인 내용,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 내역 등 최종 결제금액의 구성 내역
3. 예상 배달 소요시간
4. 소비자 불만 처리 및 분쟁해결 절차
5.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보복조치의 금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이나 해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의 정지·제한,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1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간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2.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제11조(처분대상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제1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이용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 또는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5. 재발 방지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6. 수수료율 등 서비스 이용료 및 배달비의 조정 명령

7. 정보 공개 및 제공 의무에 따라 공개·제공된 정보의 정정 또는 보완

8.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3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를 위반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부터 제8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2조의 “제80조”는 “이 법 제10조”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의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는 “이 법 제12조”로 본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를」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감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고발 등)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①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는 2억원 이하,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③ 제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준비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음식배달플랫폼 관련 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